

안전한 도시철도, 편리한 교통서비스



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희망일 제출 요청

1. 관련근거

가.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및 제4호

나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 ('13.8.6 개정) 「특수건강진단

대상 유해인자 확대」

2. 관련법령에 의거 배치전 검진 수검자는,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을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, **배치전 검사 후 6개월 이내 수검이 완료**되도록 검진 희망일 및 기관을 지정하여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실시기준(시기)

1) 현장(야간포함)근무 배치 전 「배치전 검진」, 배치전 검진 후 6개월 이내 「배치후 첫번째 검진」 실시. 다만, 붙임 "배치후 첫번째 검진 대상자"중 배치전 검진 유해인자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으로 전환배치된 경우에는 검진대상 제외 (소속별 확인)

2) 배치 후 첫번째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유해인자별 검진실시주기에 매년 정기적으로 특검 실시(일반검진과 병행실시)

나. 검진기관 :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검진 기관

- 11기관(13개소) : 녹색병원, 명지병원, 상계백병원, 서울의료원, 소중한건강증진센터, 순천향병원, 하나로의료재단(강남, 종로), 한국의료재단, KMI(여의도, 광화문), 한신메디피아, 한양대병원

다. 기타사항(과태료 부과)

1) 특검 미 실시 또는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 미 이행 시 : 1,000만원 이하 사업주에게 부과

2) 특검 미 수검시 : 해당 근로자에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(1차 5만원, 2차 10만원, 3차 15만원)

붙임 배치후 첫 번째 검진 대상자 명단(17.11월) 1부. 끝.

서울교통공사사장



수신자 광화문서비스안전센터장, 이수서비스안전센터장, 보라매서비스안전센터장, 방화차량사업소장, 신내차량사업소장, 대공원승무사업소장, 전기2사업소장, 정보통신2사업소장, 신호2사업소장, 기계2사업소장, 전자2사업소장, 건축2사업소장

차장 윤신애

팀장 최영도

차장 10/18
조진환

협조자

시행 보건환경처-3089 (2017. 10. 18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eoulmetro.co.kr

전화 02-6311-9509 전송 / pooya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